#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563

발의연월일: 2025. 5. 20.

발 의 자:백선희·서왕진·김재원

신장식 · 정춘생 · 강경숙

김준형・허 영・차규근

한창민 · 이해민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 및 임명제청에 대한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 장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공기업·준정부기업의 임원을 임명하게 되면 임명 권한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임명권 및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탄핵당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26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및 제2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공기업 임원에 대한 임명권 등의 제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 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공기업 임원에 대한 임명권 또는

제26조의2(준정부기관 임원에 대한 임명권 등의 제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따른 대통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임원에 대한 임명권 또는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5조의2(공기업 임원에 대한 임
	명권 등의 제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파
	면된 경우 「대한민국헌법」 제
	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
	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
	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공기
	업 임원에 대한 임명권 또는 임
	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u>&lt;신 설&gt;</u>	제26조의2(준정부기관 임원에 대
	한 임명권 등의 제한) 헌법재판
	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대통령
	이 파면된 경우 「대한민국헌
	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
	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
	하여 임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임원에 대한 임명권
	또는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u>없다.</u>